삶의 힘을 기르는 <mark>행복</mark>한 소래교육

2022학년도 학부모 총회

교육과정 설명 및 학부모 연수

〈차례〉

1.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안내 1
2. 학교장의 경영 철학3
3. 주요 학사 일정
4. 코로나19 대응 안내6
5. 청렴 교육7
6. 청탁 금지법
7. 학생인권교육 ········ 10
8. 교육활동보호11
9․ 평가12
1O.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금지 안내 ········ 13
11.정보통신윤리교육 ········ 15
12.학교폭력 예방 교육17
13.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19
1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23
15.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25
16.실종 및 유괴예방교육27
17.학생봉사활동 ················ 28
18.학교 안전교육 계획33
19.미인정 장기 결석, 체험학습 신청 안내 34
20 미세먼지 박생에 대한 대옷

2022.3.16.(수)

소 래 초 등 학 교

1.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안내

1. 빛깔 있는 학교

가

교육체계

비전

스스로 · 더불어 · 즐겁게

삶의 힘을 기르는 행복한 소래교육

교훈

즐겁게 배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치는 어린이

교육 목표 책을 사랑하며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새롭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서로 돕는 어린이

꿈과 끼를 스스로 계발하는 어린이

중점 교은

"책•놀•자" 프로젝트

소래 교육

- 학생참여중심 독서교육 활성화
- 기초기본학력 보장
- 실천중심 학생주도 자치 활동 강화
- | = 3 3 3 | | 안전 |•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 | • 안전
-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 안전교육 생활화
-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 강화
- 마을연계교육 활성화

핵심 역량 자주적 행동 역량 ● 비판적 성찰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문화적 소양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 민주시민역량

나 중점교육

함께 즐겁게 <mark>책</mark> 읽는 문화 조성

함께 읽는 학교 독서 문화 환경 구축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학교 공동체

- 독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실 내 작은 도서관 설치 (학년별 추천 도서)
- 도서관 도서 구입(4,10월)
- 도서관 학급시간 배정 및 수준별 도서관 이용 교육
- 공동체(학교,가정)가 함께 하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책과 <mark>놀</mark>면서 소통하는 교실

교육과정 연계 수업 실천 독서를 통한 책과 만나고 소통하는 교실

- 학년별 특색에 따른 교육과정
 연계 <u>온책읽기</u> 및 교과융합,
 주제통합형 토의토론 수업
- 한 학기 1권 이상 책 읽기 수업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 참여형 독서수업

책과 <mark>자</mark>신의 삶이 일치하는 생활 독서

교과 연계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책읽기와 함께하는 성장·평생 독서

- 자발적 독서 능력 강화를 위한 스스로 책 고르기 활동
- 교과 연계 책 읽기 및 독서활동
-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한 생활 속 독서 나눔
- 학교의 평생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관 연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 학교자율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즐겁	설 게	더블	불어	스스로			
단계			점교육 1단계로써, 관련	학교중 (책놐자프로젝트)	점교육 2단계로써, 관련	학교중점사업 (책놀자프로젝트) 3단계로써, 관련			
			-는— ,,	교육 .		교육 요소의			
		관심, 흥대	를 유도함.	생활 속에 적	응을 목표로 함.	내면화를 목표로 함.			
주	1 학 기	그림책과 놀아볼까	책으로 봄을 느껴요	생명은 소중해	우정,지역사회	<u>존</u> 엄, 진로	나의 성장여행		
제	2 학 기	그림책과 놀아볼까	독서의 맛, 가을의 맛	우리는 하나야	세계 (다문화)	미정	개인에서 사회로		

라 혁신학교 운영

과 제	추진목적	추진내용
과제 1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 • 학부모의 교육참여 확대 (학부모 공개수업, 방과후교육활동 공개, 교육과정 발표회) •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공간 재배치 및 학교 공간 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과제 2	윤리적 생활공동체	 학기초 학급별 학급세우기 주간 운영 주제가 있는 학급회의 운영 학생자치회 주관 학교행사 전개 교사, 학생, 학부모 생활 약속 만들고 실천하기
과제 3	전문적 학습공동체	• 동학년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수업 성찰과 나눔으로 행복한 배움을 만들어가는 자율장학 •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급운영 (학교알리미, 학급교육과정설명회, SNS활용 학급 소통의 창 운영)
과제 4	창의적교육과정	 •학년군별 위계를 갖춘 학교자율과정 운영 •학년별 체육예술융합프로젝트 실시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 성장중심 평가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차오름 교실 연계)

2. 학교장의 경영 철학

학교장 경영 철학

추구하는 인건성과 핵심역량

자주적인 사람(스스로)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스스로)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있는 사람(즐겁게)

문화적 소양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새로운 100년, 소래교육을 위하여…. 『진정성 리더십 을 발휘하여 온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의 주체로서 모든 가능성에 도전하여 나날이 성장하는 소래어린이

소래어린이 한명 한명을 꽃을 보듯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겠습니다. 소래어린이의 성장을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소래교직원

단 한 분의 교직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지는 교장이 되겠습니다.

소래교직원을 신뢰하며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 소래학부모

소래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소래교직원·소래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 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 주요 학사 일정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음.

국 일 명 하 수 목 금 토 일수 수요행사 1 주 6 7 8 9 10 11 12 3 3 4 5 3 3 4 5 3 3 4 3 4 5 6 7 8 9 10 11 12 4 1 3.10(4) 학교학에서의 일찍 조건(4-6년) 3.10(4) 학교학에서의 일원 선거 3.10(4) 학교학에서의 일원 선거 3.10(4) 학교학에서의 일원 선거 3.10(4) 학교학에서의 일원 선거 3.10(4) 학교학원에서의 일본 선거 3.10(4) 학교학원 조건(4-6년) 4.10(4) 학교학원에 의학 전원 전거 3.10(4) 학교학원에 의학 인원 전계전 교육(4,15-2) 1.10(4) 학교학원에 의학 인원 기념 작은 취례 의학 인원 기념 가능 취임 교육 제략후입원 1.5(4) 기계 기념 인공 기상 기계 기념 인공 기계 기념 인공 기상 기계 기념 기상 기계 기념 기상 기계 기념 기계 기념 기상 기계 기념 기상 기계 기념 기상 기계 기념 기상 기계 기념 기계 기념 기상 기계 기계 기념 기상 기계 기념 기계 기계 기계 기념 기계						0.01				4 🔾					
1주 1	월	주	요일 <mark>일</mark> 월화수목금토		F	수업 일수	주요행사								
3.4수 1 20대 대통령 선거 3 1억 13 14 15 16 17 18 19 5 4주 20 21 22 23 24 25 26 5 **3.16(취) 학보모종회 3.7수 10 11 12 13 14 15 16 5 **3.28~48. 학부모 상담주간** **5.4수 10 11 12 13 14 15 16 5 **3.28~48. 학부모 상담주간**** **5.4수 10 11 12 13 14 15 16 15 **3.16(취) 학보모종회 3.16(취) 학보모종회 3.16(취) 학보모종회 3.16(취) 학보모종회 7주 10 11 12 13 14 15 16 5 **40년제육(4.18~22) 8주 17 18 19 20 21 22 23 5 **50년에 및 인식개선교육(4.18~22) 9주 24 25 26 27 28 29 30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50년에 된 자료적임 (4.26~**) 11주 8 9 10 11 12 13 14 5 **50년에 된 자료편성) 11주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5 **56(금) 학교장 제량휴입일 **55(금) 학교장 제량휴입일 **56(금) 학교장 제량휴입을 **56(집) 한 환교장 제량휴입으로 대상되었다면 보다		1주													
3 2 3 14 15 16 17 18 19 5 3.10(4) 학단으회 3.10(4) 학단으회 3.16(4) 학단으회 3.16(4) 학단으회 3.16(4) 학단으회 3.18(4) 학단으로 제 학단으			_			_					•3.9(수) 제 20대 대통령 선거 •3.10(목)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3. 7.~3.11. 진단활동 주간(2~6학년)				
(21) 4주 20 21 22 23 24 25 26 5 *3.28-4.8 학부모 상담주간 5주 27 28 29 30 31 1 2 5 *5.28-4.8 학부모 상담주간 6주 3 4 5 6 7 8 9 5 *인권교육 및 원구사랑 주간(4.4-4.8.) 6주 3 4 5 6 7 8 9 5 *인권교육 및 원구사랑 주간(4.4-4.8.) 7주 10 11 12 13 14 15 16 5 *인권교육 및 원구사랑 주간(4.4-4.8.) 8주 17 18 19 20 21 22 23 5 *신제발달 및 시력축정(2.3.56학년)(4.25-4.29.) 9주 24 25 26 27 28 29 30 5 10주 1 2 3 4 5 6 7 3 **스래산 제험활동 (학년 자율관성)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12 2 3 4 5 6 7 8 9 10 ** 11주 12 3 4 5 6 7 8 9 10 ** 11주 2 3 4 5 6 7 8 9 10 11 4 5 ** 11주 2 3 4 5 6 7 8 9 10 11 4 6 ** 11주 2 3 4 5 6 7 8 9 10 11 4 6 6 ** 11주 19 20 21 22 23 24 25 5 ** 18주 26 27 28 29 30 1 2 5 ** 18주 26 27 28 29 30 1 2 5 ** 19주 3 4 5 6 7 8 9 4 4 ** 15주 17 18 19 20 21 22 23 5 ** 19주 3 4 5 6 7 8 9 4 4 ** 15주 17 18 19 20 21 22 23 5 ** 19주 3 4 5 6 7 8 9 4 4 ** 15주 17 18 19 20 21 22 23 5 ** 19주 10 11 12 13 14 15 16 5 ** 19주 17 18 19 20 21 22 23 5 ** 19주 17 18 19 20 21 22 23 5 ** 19주 17 18 19 20 21 22 23 5 ** 197 18 19 20 21 22 23 5 ** 198 20 21 22 23 5 ** 198 21 22 23 24 25 5 ** 198 21 22 23 24 25 5 ** 198 22 23 24 25 26 7 8 9 9 4 ** 198 3 4 5 6 7 8 9 4 ** 199 3 4 5 6 7 8 9 5 ** 199 3 5 6 5 ** 199 3 6 7 6 7 8 8 9 6 7 8 8 9 6 7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ь	/	8	9	10	11	12	4					
5주 27 28 29 30 31 1 2 5 ** 6주 3 4 5 6 7 8 9 5 ** 6주 3 4 5 6 7 8 9 5 ** 7주 10 11 12 13 14 15 16 5 ** 8주 17 18 19 20 21 22 23 5 ** 9주 24 25 26 27 28 29 30 5 ** 10주 1 2 3 4 5 6 7 3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8 9 10 11 12 13 14 5 ** 11주 13 14 15 16 17 18 19 20 21 5 ** 13주 22 23 24 25 26 27 28 5 ** 14주 29 30 31 1 2 3 4 4 ** 15주 5 6 7 8 9 10 11 4 ** 6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 117주 19 20 21 22 23 24 25 5 ** 117주 19 20 21 22 23 24 25 5 ** 117 18 19 20 21 22 23 24 25 5 ** 117 18 19 20 21 22 23 24 25 5 ** 117 18 19 20 21 22 23 5 ** 1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21)	3주	13	14	15	16	17	18	19	5					
-독도교육 및 통일교육 주간(4.11.~4.15.) - (21)		4주	20	21	22	23	24	25	26	5	•3.28.~4.8. 학부모 상담주간				
-독도교육 및 통일교육 주간(4.11.~4.15.) - (21)		5주	27	28	29	30	31	1	2	5					
- 상애이해 및 인식개선교육(4.18-22) - 상애이해 및 인식개선교육(1.8-22) - 상애이해 및 인식개선교육(1.8-22) - 인계출체육함으로젝트(4.26-7) - 이러이날 기념 작은 체육대회(4.27.~5.4; 6학년~1학년 순) - 이러이날 기념 작은 제육대회(4.27.~5.4; 6학년~1학년 순) - 이러이날 기념 작은 제육대한 제육대한 제육대한 제육대한 제육대한 제육대한 제육대한 제육대한								·							
- 예술체육용합프로젝트(4.26~) - 이어린이날 기념 작은 체육대회(4.27.~5.4.; 6학년~1학년 순) - 이어린이날 기념 작은 체육대회(4.27.~5.4.; 6학년~1학년 순) - 학부모 공개수업 주간(4. 11.~4. 15) - (50) - (20) - (12주 15 16 17 18 19 20 21 5 - 5.6(금) 학교장 개량휴업일 - (5.6(금) 학교장 개량휴업일 - (5.6(금) 학교장 개량휴업일 - (5.6(급) 학교장 개량휴업일 - (5.6(급) 학교장 개량휴업일 - (5.6(급) 학교장 개량휴업일 - (6.1(수) 2022 지방선거 - (6.1(수) 2022 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 (7.4.(월) 개교기념일 - (7.4.(월) 개교기념일 - (7.25(월) 여름방학식 - (여름방학 24일간 - (여름생학		6주	3	4	5	6	7	8	9	5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교육(4.18~22)				
2 8주 17 18 19 20 21 22 23 5 아이런이날 기념 작은 체육대회(4.27.~5.4; 6학년~1학년 순) * 학부모 공개수입 주간(4.11.~4.15.) * 학교장 재량휴입일 ** 5.6(급) 학교장 재량휴입일 ** 5.6(급) 학교장 재량휴입일 ** 5.8(일) 부처남오신날 ** 5.6학년 체력측정평가(5.16.~5.20.) ** 생명존종교육주간(5.23.~5.27.) * 생명존종교육주간(5.23.~5.27.) * 생명존종교육주간(5.23.~5.27.) * 생명존종교육주간(5.23.~5.27.) * 학명존종교육주간(5.23.~5.27.) * 학명존조교육주간(5.23.~5.27.) * 학명조교육주간(5.23.~5.27.) * 학명조교육주간(5.23.~5.27.) * 학명조교육주간(5.23.~5.27.) * 학명조교육주간(5.23.~5.2	4	7주	10	11	12	13	14	15	16	5					
9주 24 25 26 27 28 29 30 5 10주 1 2 3 4 5 6 7 3 *소래산 체험활동 (학년 자율편성) 11주 8 9 10 11 12 13 14 5 *5.6국) 어린이날	(21)	8주	17	18	19	20	21	22	23	5	•어린이날 기념 작은 체육대회(4.27.~5.4.; 6학년~1학년 순)				
10주 1 2 3 4 5 6 7 3 *소래산 체험활동 (학년 자율편성) 11주 8 9 10 11 12 13 14 5 *5.5(목) 어린이날 *5.5(목) 어린이날 *5.6(금) 학교장 재량휴업일 *5.8(일) 부처님으신날 *5.6학년 체력측정평가(5.16.~5.20.) *생명존중교육주간(5.23.~5.27.) 14주 29 30 31 1 2 3 4 4 *** 15주 5 6 7 8 9 10 11 4 ** 15주 5 6 7 8 9 10 11 4 ** 6 (20)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 17주 19 20 21 22 23 24 25 5 ** 18주 26 27 28 29 30 1 2 5 *7.4.(월) 개교기념일 *7.25(월) 여름방학식 *여름방학 24일간		9주	24	25	26	27	28	29	30	5	<u>* 역부도 공개부합 무선(4. 11.~4. 15.)</u>				
10구 1 2 3 4 3 0 7 3 11주 8 9 10 11 12 13 14 5 12주 15 16 17 18 19 20 21 5 13주 22 23 24 25 26 27 28 5 14주 29 30 31 1 2 3 4 4 15주 5 6 7 8 9 10 11 4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17주 19 20 21 22 23 24 25 5 18주 26 27 28 29 30 1 2 5 19주 3 4 5 6 7 8 9 4 20주 10 11 12 13 14 15 16 5 7 (16) 202 7 18 19 20 21 22 23 5											• 소래사 체험활동 (한년 자유평성)				
5 (20) 12주 15 16 17 18 19 20 21 5 (5.6(금) 학교장 재량휴업일 (5.8(일) 부처남오신날 (5.6학년 체력측정평가(5.16.~5.20.) (상명존종교육주간(5.23.~5.27.) (상명존종교육주간(5.23.~5.27.) (6.1) 학교장 재량휴업일 (5.8(일) 부처남오신날 (5.6학년 체력측정평가(5.16.~5.20.) (상명존종교육주간(5.23.~5.27.) (상명존종교육주간(5.23.~5.27.) (6.1(후) 2022 지방선거 (6.1(후) 2022 지방선거 (6.6(월) 현총일 (20시) (6.8. 2교시) (6.6(월) 현총일 (20시) (6.8. 2교시) (6.6(월) 현총일 (20시) (6.8. 2교시) (6.8.			1	2	3	4	5	6	1	3					
12주 15 16 17 18 19 20 21 5 5.6학년 체력측정평가(5.16.~5.20.) 13주 22 23 24 25 26 27 28 5 14주 29 30 31 1 2 3 4 4 0.1(수) 2022 지방선거 15주 5 6 7 8 9 10 11 4 0.1(수) 2022 지방선거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17 19 20 21 22 23 24 25 5 18주 26 27 28 29 30 1 2 5 0.7.25(월) 여름방학 24일간 19주 3 4 5 6 7 8 9 4 0.7.25(월) 여름방학 24일간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7 18 18 18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9 20 21 22 23 5 0.7.45(월) 기교기념일 17주 17 18 17 17 18 17 17 18 18	5	11주	8	9	10	11	12	13	14	5					
13주 22 23 24 25 26 27 28 5 *생명존중교육주간(5.23.~5.27.) 14주 29 30 31 1 2 3 4 4 *6.1(수) 2022 지방선거 *6.6(월) 현충일 15주 5 6 7 8 9 10 11 4 *6.6(월) 현충일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7.25(월) 여름방학식 *여름방학 24일간 *여름방학 24일간 *여름방학 24일간 *6.6(월) 한창의 *6.1(후) 202 지방선거 *6.6(월) 현충일 18주 26 27 28 29 30 1 2 5 *7.4(월) 개교기념일 *7.25(월) 여름방학 24일간 *6여름방학 24일간 *6여름방학 24일간 *6이름방학 24일간 *6이름바학	(20)	12주	15	16	17	18	19	20	21	5					
14주 29 30 31 1 2 3 4 4 ·6.1(수) 2022 지방선거 ·6.6(월) 현충일 15주 5 6 7 8 9 10 11 4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17주 19 20 21 22 23 24 25 5 18주 26 27 28 29 30 1 2 5 ·7.4.(월) 개교기념일 ·7.25(월) 여름방학식 ·여름방학 24일간 19주 3 4 5 6 7 8 9 4 20주 10 11 12 13 14 15 16 5 7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13주	22	23	24	25	26	27	28	5					
6 (20)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17주 19 20 21 22 23 24 25 5 18주 26 27 28 29 30 1 2 5 19주 3 4 5 6 7 8 9 4 20주 10 11 12 13 14 15 16 5 7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합동소방훈련(2교시) (6.8. 2교시)				
15주 5 6 7 8 9 10 11 4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177 19 20 21 22 23 24 25 5 187 26 27 28 29 30 1 2 5 •7.4.(월) 개교기념일 •7.25(월) 여름방학식 •여름방학 24일간 197 3 4 5 6 7 8 9 4 207 10 11 12 13 14 15 16 5 7(16) 217 18 19 20 21 22 23 5		14주	29	30	31	1	2	3	4	4					
(20) 17주 19 20 21 22 23 24 25 5 18주 26 27 28 29 30 1 2 5 19주 3 4 5 6 7 8 9 4 20주 10 11 12 13 14 15 16 5 7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15주	5	6	7	8	9	10	11	4	V.V.(2) 1002				
17주 19 20 21 22 23 24 25 5 18주 26 27 28 29 30 1 2 5 19주 3 4 5 6 7 8 9 4 20주 10 11 12 13 14 15 16 5 7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16주	12	13	14	15	16	17	18	5					
18주 26 27 28 29 30 1 2 5 19주 3 4 5 6 7 8 9 4 20주 10 11 12 13 14 15 16 5 7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20)	175	10	00	0.1	00	00	0.4	٥.	_					
19주 3 4 5 6 7 8 9 4 19주 10 11 12 13 14 15 16 5 7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177	19	20	21	22	23	24	25	5	7.4/00.711.7.71.100				
20주 10 11 12 13 14 15 16 5 7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18주	26	27	28	29	30	1	2	5	12, 1 122				
7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19주	3	4	5	6	7	8	9	4	•여름방학 24일간				
(16)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20주	10	11	12	13	14	15	16	5					
		21주	17	18	19	20	21	22	23	5					
			24			27			30						
			31												
18 20 19 20 20 98				18	20	19	20	20		98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음.

[※]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여부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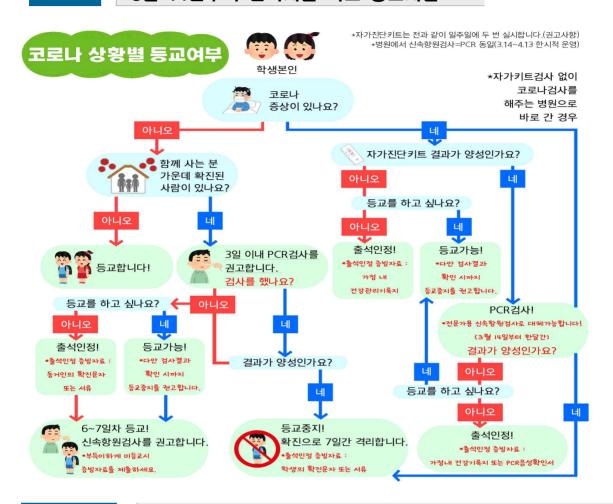
월	z	요일				수업	주요행사							
픨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 일수					
			1	2	3	4	5	6	0	•8.19(금) 2학기 개학식 •2학기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8 -		7	8	9	10	11	12	13	0					
(7)	1	14	15	16	17	18	19	20	1					
	2	21	22	23	24	25	26	27	5					
	3	28	29	30	31	1	2	3	5					
	4	4	5	6	7	8	9	10	4	.01717 O U 5171121 Z7F0 12 -0 1/)				
9 (17)	5	11	12	13	14	15	16	17	4	•인권교육 및 친구사랑 주간(9.13.~9.16.) •9.9(금)~9.12(월) 추석 연휴				
	6	18	19	20	21	22	23	24	5	•9.12(월) 대체공휴일 •9.26~10.7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7	25	26	27	28	29	30	1	5					
	8	2	3	4	5	6	7	8	4					
10	9	9	10	11	12	13	14	15	4	•10.3(월) 개천절 10.4(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10.9(토) 한글날 10.10.(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9)	10	16	17	18	19	20	21	22	5	•소래산 체험활동 (학년자율편성)				
	11	23	24	25	26	27	28	29	5	T L TETECTELO				
	12	30	31	1	2	3	4	5	5	•안전 한국 훈련 주간(10.24.~10.28.)				
11	13	6	7	8	9	10	11	12	5	•교육과정 워크숍 주간(11.21.~25.) •교육과정 발표회(11.16.)				
(22)	14	13	14	15	16	17	18	19	5	- <u> </u>				
	15	20	21	22	23	24	25	26	5					
	16	27	28	29	30	1	2	3	5	•202 3 학년도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12.1. 1-2교시)				
	17	4	5	6	7	8	9	10	5	•2022.12.22(목) 신입생 예비소집일(14:00) 2022학년도 1학년 담임 ★2022.12.30.(금) 종업식, 졸업식				
12 (23)	18	11	12	13	14	15	16	17	5	•겨울방학(61일)				
	19	18	19	20	21	22	23	24	5					
	20	25	26	27	28	29	30	31	5					
1														
(2)														
2														
2 (0)														
			16	19	19	19	19		92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음.

4. 코로나19 대응 안내

1

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학교 등교지침



2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 가. 등교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학교 갈 수 있는 지 확인해요
- 나. 학교에서는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요.
- 다. 쉬는 시간마다 30초동안 비누로 손을 씻어요
- 라. 학교 생활 중에 늘 거리두기를 실천해요
- 마. 교실 문은 항상 열어두고 쉬는 시간에는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서 새 공기로 바꿔요.
- 바. 확진되었다고 친구를 놀리지 않아요.
- 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 생활 중 답답하거나 기침, 목아픔 열이 있으면 참지말고 담임선생님 께 말씀드려요
- 아.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요(음식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기, 잠을 충분히 자기. 규칙적으로 운동하
- 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개인물통 준비하여 수시로 물마시기 등)
-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고 나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요.

5. 청렴 교육

1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등 교육 활동 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u>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u>여 학교발전기금회 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2 주요 위반 내역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 반대표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갹출

3 불법찬조금의 유형

- O 불법찬조금의 유형
- ▶ <u>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u>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 <u>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u>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 <u>학교장 등이</u>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4 불법찬조금 신고

- 시흥교육지원청 : http://goesh.kr → 사이버신고센터 → 불법찬조금신고
- 전 화 :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031)488-2463

6. 청탁 금지법

1 적용 대상 및 내용

- □ 적용대상(법 제11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규칙도 포함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해당함

< 예 시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등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5조~제9조)
 -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 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제7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대상직무 >

①인·허가 등 직무, ②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③채용·승진 등 인사, ④공공기관 의사 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직무, ⑤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관련 직무, ⑨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학교 입학·성적 등관련 직무, ⑪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 ⑫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 부정청탁 예외사유 >

①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선출 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령·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④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⑤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대응조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은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법 제8조~제9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 공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님
 - * 민간위원의 배우자가 민간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민간위원이 제재대상이 됨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①공공기관의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3・5・10만원 범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③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상품 등, ⑧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대응조치) 민간위원(배우자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 기관의 장에게 신고
- *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 의사 표시)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 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확인
 - *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기관별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하여야 함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신고**

7. 학생인권교육

1

학생 인권 관련 법률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4]

2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목적

- 2010년 9월 17일 제정, 동년 10월 5일 공포
- 조례는 학생이 인권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공 동체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주요내용

-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학교는 가족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의 학생의 개인정보가 공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제16조(의사표현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교는 학생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이 학칙 제정과 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는 학생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 교육활동보호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 상해와 폭행의 죄: 타인의 신체 또는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및 타인의 신체에 힘을 행사하는 행위
- 협박의 죄: 상대방에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로 겁을 주는 행위
-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하는 행위 및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하는 행위
- 손괴의 죄: 물건을 원래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 행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 -불법정보 유통 행위: 핸드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 -공무·업무방해죄: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성적 언동: 성적 언동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 나. 교원지위법에 대한 의견

교원지위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도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u>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u>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u>신뢰를 바탕</u>으로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u>존중</u> 속에서 <u>학생 인권과 교권</u>이 <u>조화로운</u> 성숙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 평가

1 목적

학생의 개인별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동기를 격려하며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2 방침

- 가. 교육과정 중심의 목표지향평가와 성장중심 평가로 전환
- 나. 교사별 평가를 시행하며 질적 평가 체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
- 다. 수행평가로 실시하며, 논술형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 라. 평가 산출물 및 결과는 가정으로 통지하여 학생의 학습지도 자료로 활용

3 영역별 평가 방법

평가 영역		가의 중류	시 기	횟 수	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교과	진단활동 주간		3.7. ~11	1회	2-6학 년	단원별 기초요소	■ 2학년 : 학년 평가지 활용 ■ 3~6학년 : 교육청 평가지 또는 동학년 교 사 출제(국어, 수학) ※ 부진학생은 개인별 보충지도
학습 발달 상황	상시	수행형 평가	수시	수 시	전교생	논술형, 실기, 기능	■ 상시평가 계획서(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작성 및 활용 ■ 평가산출물 및 평가결과는 가정에 통지
	명 가	정의적 능력 평가	수시	수 시	전교생	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협력, 동기	■평가결과는 학생상담 및 진로교육, 인성 교육의 주요 자료로 활용 ■ 1, 2학기에 학급별 실시
	자율활동		연중	수 시	전교생	역할분담,기본생활습 관,교우관계 의식 및 행사참여, 현장학습 참여	
창의적	동아리활동		연중	수 시	전교생	흥미와 취미, 기능, 참여도	■ 영역의 특성을 살려 평가척도표 작성 활용
체험 활동	봉사활동		연중	수 시	전교생	청소,주변정리, 저탄소생활습관 등	■ 장점, 특기, 우수한 사항 기록
	진로활동		연중	수 시	전교생	자기이해도,진로탐색 활동참여	
	안전	한생활	연중	수 시	1-2학년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금지 안내

1 추진 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6. 12. 20)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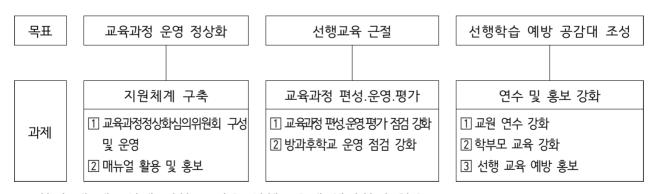
2 추진 목적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및 인식전환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출제 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 정착

3 주요 추진 과제 및 내용

비전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 학기 내 재구성에 의한 조정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규제됨.
- 예외: 영재교육기관, 조기진급자, 적용배제교과(군)
- 1, 2학년 적용교과: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 3~6학년 적용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영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5 학부모 생각 바꾸기

- 가느다란 전선에 과도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과부하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과도한 선행학습은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학습 흥미와 자기관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 아이가 공부를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연령과 학습 진도에 맞는 제철학습을 하고,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공부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11.정보통신윤리교육

1 정보통신윤리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통신윤리는 왜 필요한가?

- 가. 사이버 공간을 유익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 나. 정보통신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해준다.
- 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 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컴퓨터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

3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다.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 라.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마.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 바.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사.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4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 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라.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5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나. 온라인상의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주변의 조언도 참고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도록 하다.
- 다.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는다.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라.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진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마.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좋다.
- 바.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킨다.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6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

- 가.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자제해야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나.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혹은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규칙을 정한다.
- 다. 스마트미디어를 끌 때에는 반드시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라. 강압적으로 사용을 제지하는 것은 자녀의 조절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분노감을 느끼게 하거나 스마트미디어를 더 갈구하게 만든다.
- 마. 자녀와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바. 스마트미디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사.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을 설치한다.
- 아.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량을 점검해 본다. 어플은 목적별로 두 개 정도만 사용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필요한 어플은 정리하도록 자녀와 이야기한다.
- 자.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다.
- 차.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준다.
- 카.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는 어떤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다.
- 타. 현실공간에 잘 적응하는 것이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의 시작임을 알려준다.
- 파. 자녀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
 - 그린 아이넷: 컴퓨터 유해정보차단 및 시간관리 프로그램(http://greeninet.or.kr)
 - 스마트 보안관: 자녀 폰 관리 프로그램(유해 정보 차단, 이용시간 관리) 오픈 마켓(play 스토어, T스토어 등)에서 다운 후 설치

12.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의 개념 및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학교 환경적 요인 4) 지역사회와 문화적인 요인

학교폭력 실태 현황 및 특징

가. 학교폭력 실태 현황

- 1) 학생 10명 중 2명은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
- 2) 빵셔틀(강요에 의한 심부름)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함
- 3) 이유 없는 가해의 증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 폭력의 일상화
- 4)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심각, 집단 따돌림 극심
- 5) 여학생 폭력의 심각화
- 6) 학교폭력 학교 내 발생이 가장 높아
- 7) 학교폭력 피해의 45%는 2주 이상 장기간의 지속 피해 경험
- 8)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0%는 절대 다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나) 학교폭력의 특징

- 1) 최근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초등학생의 발생률이 높아 저연령화 추세.
- 2) 학교 내의 폭력이 집단화, 조직화되는 경향.
- 3) **언어폭력, 따돌림** 등이 가장 빈번,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이나 자살

학교폭력 유형별 이해 및 대응방안

가. 신체폭력 유형

-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찌르고 목 조르는 행위

- 꼬집기 손가락 뒤로 꺾기
-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때리기
- ■칼이나 컴퍼스, 몽둥이 의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해서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

나. 언어폭력 유형

- 성격 공격 능력 공격

- ■배경 공격 ■생김새 공격 ■저주

- 조롱
- ■협박
- 욕설
- *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학생에게 언어적 공격이나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폭력이 된다.

다. 금품갈취 유형

-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빌리기
- ■'옷이 예쁘다'는 말을 은근히 계속하여 입고 있는 옷 빼앗기
- ■돈을 걷어 오라고 하기
- ■교통카드,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빼앗기

라. 집단따돌림 유형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빈정거림

- 면박이나 핀잔주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일 ■거부하기

■골탕 먹이기

마. 괴롭힘 유형

■언어적, 상황적 협박과 강요 ■두려움을 주는 일

■ 겁주는 행위

■ 무시하기

■ 조롱하는 행동

■속임수

■ 좌절감을 주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낙서를 하는 행위

■ 집적거리는 행위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동

■강요에 의한 심부름(일명 빵 셔틀)

바.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유형

■사이버 모욕 :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개인이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 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사이버 성희롱 :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 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문자로 협박하는 내용을 보내는 것

■ ID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아이템에 대한 사기 및 절도 행위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처리 절차

처 리 단 계	처 리 내 용
학교폭력 사안 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사안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관련학생 및 주변 학생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교내 전담기구 심의 -> 요건충족 및 동의 시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종료) -> 피해학생 적응 및 가해학생 선도 등 관계회복 지도
학교장자체해결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교육청) 개최 -> 조치 심의 및 의결, 분쟁 조정
교육장 조치결정	학교장 통보
조치 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13.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

1 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

최근 어린이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학생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에 관해 오해하기 쉬운 내용 ==

- 으슥한 곳에서만 --->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지에서 41.4% 발생
- 여자 아이만 ---> 남자아이의 7.8% 정도가 피해자임
- 가해자는 낯선 사람 ---> 아는 사람(약 70%) 즉 이웃사람, 친인척, 심지어 가족까지!

== 가해자는 어린이를 이렇게 유인합니다. ==

- 차 밖에 있는 어린이에게 몸의 불편함을 가장한 뒤 차안의 물건을 꺼내 달라고 도움을 요청
- 길을 물으면서 가는 길에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유인
- 설문지 조사를 한다면서 접근 선물을 준다고 으슥한 곳으로 유인
- 놀이터에서 "심심하겠다,같이 놀아줄까"하며 접근, 자신의 집에 가면 게임기가 있다고 유인
- 가족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 병원이나 다른 곳으로 데려 가려고 하는 경우 (범인들은 엄마가 병원에 사고로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흔히 함)

== 아이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

➡ 장애가 있는 척 가장하면서 어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주위의 다른 어른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즉 어른이 도움을 요청하면 자녀가 직접 도와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안의 물건을 꺼내달라고 할 경우 다른 어른을 데려 올께요, 전 학원가야 해요, 엄마 심부름 가야해요 등의 말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가족이라도)

단 둘이 있을 때에는 피하거나,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싫어요 "제 몸에 손대지 말고 말로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하도록 지도하며, 보호자(엄마, 아빠, 할머니, 선생님 등)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u>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과 상의하고 행동하도록 합니다.</u>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져 오면 집 앞에 놓고 가던지 경비실에 맡기도록 합니다.(택배 올 것이 있는 경우 미리 자녀에게 말해둡니다.) 즉,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집에 들이지 않으며, 문을 열어 주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도와줄 수 있는 이웃과의 비상보호망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평소에 잘 가는 가게(슈퍼, 마트 등)나 약국, 문구점 등에 가서 인사를 하고 지내면서 비상시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누군가 "심심하지? 함께 놀자"는 등의 말로 다가오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슈퍼나 약국, 문구점 등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자녀의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신발가방, 학원가방 등에 쓰여져 있는 학교 학년 반 이름을 보고 범인들은 아는 사람인척 자녀에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알아도 안심하고 믿어버리는 어린이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 ⇒ <u>낯선 사람이 차를 태워주거나 길을 물을 때 차에 타거나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u> 가능한 못들은 척하고 가던 길을 더 빠르게 걸어가도록 합니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 ➡ 낯선 다른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도록 합니다.

층이 높지 않을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비상벨 가까운 쪽에 서도록 하고 가능한 옆이나 뒤쪽에 서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도록 지도합니다.

원치 않는 접촉이 있을 때나 애매한 느낌의 상황일 때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 ❖ 성범죄자 정보공개 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팝업-"아동성폭력예방 부모교육 동영상"
- ❖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의료지원, 심리상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
- ❖ 경기 해바라기 아동센터 : 031-708-1376 · 경기 ONE-STOP 지원센터
- ☞ 소래초등학교 성폭력 관련 상담실 운영 : 1층 보건실내 상담실
- ❖상담원 : 보건교사 1명 ☎ 070-7097-1628
- ❖사안 발생시 담임을 통한 상담활동 등

2

디지털 성폭력 예방-온라인 그루밍 대처하기

N번방 사건을 필두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 접속시간이 늘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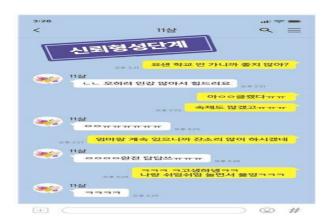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분석하면 가해자는 10-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하여 알고 대처할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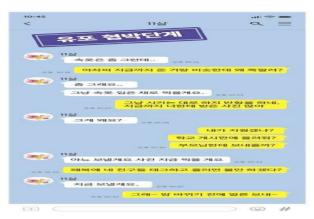
□ 온라인 그루밍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자녀의	대화창을	살펴보고	대화를	해주세요
------------	--------	---------	------	------	-----	------

(발생순서: 접근 →신뢰 쌓기→ 개인정보 묻기 →사진 요구 → 협박)

(발췌:2020.10.6. 서울신문)

□ 예방의 핵심은 '소통'과 '대화'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든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이와의 대화를 통하여 일상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아이의 안전의 책임은 우리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의 관심이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출처:젠더온)

□"우리 비밀친구 할래?"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적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고 대상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길들이는 과정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실제는 가해자가 아동을 성폭력을 할 목적으로 아동과 친 밀해지기 위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행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루밍을 통한 친밀감 형성이 더 효과적

▶온라인 그루밍이란 ?

게임, 채팅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환심을 사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좁게는 직접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하고 부당한 행동을 권유하는 것부터 넓게는 성적 사진과 영상을 올리도록 응원하는 행위까지도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에 속한다.

사례) "네가 너인걸 증명해봐"- "네가 진짜 A 맞아? 네가 A 라는걸 증명해봐, 증명 못하면 사진 도용했다고 말 할거야" 그래서 A 학생은 자신의 아이디와 함께 셀카를 찍어 보냈고 셀카를 받은 가해자는 돌변하여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A의 사진을 다른 알몸 사진과 합성 시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학생증(명찰) 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접근

-공짜로 문화상품권과 기프트 카드를 준다는 글을 보고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해자는 A에게 학교명, 이름이 보이는 명찰 사진과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넌지시 물어보았다. A는 이를 전송했고 가해자는 돌변하여 몸 사진을 찍어야 상품권을 준다고 하였고 A가 이를 거절하자 학교 홈페이지에ooo(A 친구 이름)과 욕설을 게시 했고 A는 가해자의 협박에 응함

"너의 신상정보가 돌아다녀! "접근

A는 어느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거 그쪽 신상정보 아닌가요? 비공개 SNS 신상에 돌아다녀요, 학생이신 것 같아 걱정되어 알려드려요"라고 메시지를 받았다. A가 메시지 링크를 누르니 누군가의 계정이 아닌로그인 창이였고 자신의 SNS 로그인이 풀렸다고 생각한 A가 자신의 비밀번호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순간 A의 로그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해킹되었고 가해자는 A의 신상정보를 빌미로 얼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며 협박

"나 너랑 같은 성별이야, 너랑 동갑이고. 걱정하지마 "접근-A가 문자 링크를 누르자 A의 현지 위치, 주

소, SNS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해킹이 되어 전송되었다. 가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A의 집 주소 등을 온라인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몸사진을 요구

"이것 좀 보세요, 누가 님 사진 합성해서 올렸나 봐요" 접근-놀란 A가 문자 링크를 누르자 A의 현지 위치, 주소, SNS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해킹이 되어 전송되었다. 가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A의 집주소 등을 온라인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몸사진을 요구.

- □ 지금까지 처벌 힘든 온라인 범죄들 이제는 처벌받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1.2.26)으로 아래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온라인 대화도 처벌이 가능(법 개정 전에는 '성 구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불러내는 행위만 처벌이 가능),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온라인에 서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는 것,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는 행위, 동 영상 촬영을 유도하는 행위 이제는 범죄
- ①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②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을 이같은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라면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1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u>가정폭</u>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 ☞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 <u>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u>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u>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u>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적 손상을 입히거나	언어적/정서적위협,	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이를 허용하는 모든	감금/억제/기타 가학적	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인 행위	모든 성적행동	행위				

4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포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 잘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 합니다.
- ※ 모든 어린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세요.
- ※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는 112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1 청소년기 자살의 특징

청소년 자살의 특징

- 발달 단계 특성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이다.
-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동기를 갖는다.
-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
-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2 지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오해)과 진실

★ 대부분의 자살은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 신적인 충격이 원인이 다.

1

★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1

★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고야 말 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 이다.

1

◈ 자살은 한 가지 이유만 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

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 랜 시간 동안 개입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지살 위 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 시도 전에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이야 기하거나 암시한다.

※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끊임없는 고민을 한다. "죽을 거야."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무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지산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지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살의 단서(위험경고)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인 사람은 이러한 단서를 보이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이런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언어적 단서(대화, 일기, 낙서 등)

행동적 단서

- ✓ 내가 사라져 줄게.
- ✔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 ✓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 ✔ 이젠 정말 끝이야.
- ✓ 아무 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 ✓ 내가 보여 줄거야. 만족하길 바래.
- ✔ 엄마. 아빠 "미안해."
- ✔ "안녕"

- ✓ 갑작스런 행동 변화, 활동 수준 증가 또는 감소
- ✓ 물건을 정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
- ✓ 소중한 물건이나 받았던 상장 등을 버리기
- ✔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인사
- ✔ 용건 없이 불숙 연락해서 "잘 지내라."고 이야기 함
- ✓ 섭식 행동의 장애 먹지 못하거나 혹은 과식
- ✓ 수면 형태의 변화
- ✓ 단정치 못한 외모
- ✓ 갑작스런 기분 향상-불안해하던 아이가 평화로워 보임

4

지살 예방을 위한 방법

개 인

- ❖ 모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 ❖ 적극적인 문제 해결력
- ❖ 감정을 통제하며 적절히 표출하기
- ❖ 주변에서 적절한 조언 구하기
-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하기
- ❖ 자신에 대해 가치를 높게 판단하는 자존감

가 정

- ◈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 ◈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긍정적 지지
- ❖ 긍정적인 가족 가치관, 결속력
- ◈ 자녀의 장점을 찾아주고 격려하기
- ❖ 좋은 양육 환경과 태도

5

지살에 관한 도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상담전화

한국생명의 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사랑의 전화 한국청소년상담원 www.lifeline.or.kr/1588-9191 www.suicideprevention.or.kr www.counse124.com/1566-2525 www.kyci.or.kr/739-2000

16.실종 및 유괴예방교육

1 시전등록 신청하기

-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으세요. 안전Dream홈페이지,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2 실종아동 예방용품 활용하기

-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토록 하세요.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하고,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자녀에 관한 정보 기록하기

-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실종아동 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두고, 아이의 인적 사항을 적어 둔 카드를 집에 비치해 둡니다.

실종이동 보호 전문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Web 사이트 주소
어린이 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	02)777-0182	http://www.missingchild.or.kr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 센터	국번없이 182	http://safe182.go.kr

5 예방수칙

행동수칙1-예방수칙

- 사람이 많은 길로 다니기
-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
- 내 위치 항상 가족에게 알리기
- 낯선 사람과 둘이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 낯선 사람이 차에서 길을 물으면 차 가까이 가지 않기
-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 집안에 들이지 않기
- 놀이터에서 혼자 놀지 않기
- 학교 주변「어린이 안전지킴이집」알아두기
- 긴급번호 112, 117, 182 외우기

17.학생봉사활동

2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봉사활동 참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봉사활동의 정의와 기본방향

-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으로 학생 개개인이 <u>계획을</u> 수립하여 실행하는 봉사활동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이 봉사활동의 기본방향임.

봉사활동의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W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u>사전에 담임(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u>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apos,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에 준하여 계획서 제출은 생략

3.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7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2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1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 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리더십 배양과정의 교육과정상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리더십 배양과정 참가 내용은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

4.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기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5.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7.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8.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는 필수 조건이 아님)
 - 예)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사전교육-제작-평가」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9.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 없음)

10.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u>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u>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 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u>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u>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1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 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 (해당 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제3호에 학생이 재학 중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u>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u>,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다만,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14.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u>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u> 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u>학년말 봉사활동을</u>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5.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6.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7. 번역

- <u>공익적 목적으로 공식적 요청을 받은 경우</u>,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활동 내용 등록, 공 개된 홈페이지에 활동 내용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의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8.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9. 학생이 실무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부득이한</u>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 실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20.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봉사활동이「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하되.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21. 헌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당해 학년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 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2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예: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평가단 등)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18.학교 안전교육 계획

1 세부 추진 계획

중점활동	추진내용	목표	대상	시기
	·안전교육 연간계획수립	1회	전학년	3월
	·교육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활용 - 관련교과, 창의 체험 등을 통한 안전교육 51차시 이상 시수 확보	연중	전학년	3월~2월
안전교육	·전 교직원 대상 학교안전계획 연수 실시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활용 교직원 연수 실시 - 전직원 대상 연수 -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 과목 포함 운영	연중	교직원	3월~2월
	·방학중, 계절별 중점 안전교육 실시	2회	전학년	7월, 12월
	·현장 체험학습 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	1회	전학년	5월
	·체육대회, 입학식 등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 시작 전 1분 안전 교육 권장	연중	전학년	3월~2월
	·『나·침·반 5분 안전교육』콘텐츠 자료 활용 - 아침시간 및 자투리 시간, 중간놀이시간 등을 활용 - 나·침·반 안전교육 가정연계지도	연중	전학년	3월~2월
	· 소방훈련(소방서 연계)	1회	전학년	6월
체험중심	· 재난 안전 한국훈련-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2회	전학년	10월
안전교육	· 민방위의 날 - 민방공 대피 훈련	2회	전학년	3월,9월
실시	· 보행자 지도교육	1회	전학년	4월
	· 체험식 화재예방 및 소방교육 실시	1회	전학년	6월
교통안전	· 실버인력 활용 교통안전지도 · 학교 주변 배움터 지킴이 운영 · 어머니 폴리스 운영	연중	전학년	3월~2월
	·안전 점검의날 운영 - 매월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 학교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가능성	12회	담임 및 행정 지원팀	3월~2일 (매월4일)
	·학교 안전 위험성 진단 (태풍, 홍수등)		+11 = 1	10~12월
안전 보호	·CCTV활용 및 연중 모니터링 ·CCTV 설비의 지속적 관리	연중	행정 지원팀	3월~2월
지원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1회	행정 지원팀	10월~12월
	·안심알리미서비스 - 안심알리미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개통	연중	전학년	5월~4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연중	유관기관	3월~2월

19.미인정 장기 결석, 체험학습 신청 안내

1 미인정결석 기간별 대응 조치

결석 일수	학교 조치 중 학부모 연락 사항	학부모 협조 사항
1 (결석 당일) 2	• 결석 학생 및 보호자에게 유선연락 실시, 출석 독려 • 소재 미확인시 경찰 협조 요청 실시	• 담임교사가 <u>학생과 직접 통화</u> 하여 소재·안전 확인해야 하므로 학생과 통화할 수 있도록 협조
3~5 일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u>가정방문 실시</u>하여 출석 독려. 가정방문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 확인,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가정방문 협조
6일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함. 내교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함. 	• 유선 연락 협조 • 우편함 확인
7~9 일	•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u>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u> 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고, 출석을 독려함.	• 학생과 함께 내교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연간 20일 한도) (가정학습포함시 연간 57일)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제출 종료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능일: 연간 최대 57일(가정학습 포함)

⇔일반적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20일 한도

⇔가정학습으로만 57일도 사용 가능함. ⇔일반적인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의 합이 57일을 넘을 수 없음.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2022 문서양식'에 있습니다.

20.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응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u>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u>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PM ₁₀ 150이상 또는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교실)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 ₁₀ 300이상 또는 PM ₂₅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교실) 공기정화장치 가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하여 수시로 공기질 확인, 고농도 미세먼지 확인 시 등·하교시 마스크 착용 지도
- 경기도 경보문자 신청방법 http://air.gg.go.kr/airgg, :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 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